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3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박대출·박성민·최형두

김정재 · 강민국 · 박정하

윤한홍 · 정점식 · 김태호

윤영석 · 신성범 · 이인선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 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 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 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2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		특례유형	존속기한
219	「우주항공복합도시 법」 제47조	건설을 위한	특별	장기 사용허가등	2035. 12. 31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